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48-01

www.mafra.go.kr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13. 5.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총 목 차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6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3 제2조(정의) ····· 3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 5 제4조(자조금의 용도) ····· 8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 9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 12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 13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 14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 19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 20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 20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 21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 23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 24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24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 27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 28	제1조(목적) ····· 3 제2조(대의원의 총수) ····· 14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 15	제1조(목적) ····· 3 제2조(축산물의 종류) ····· 3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 6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 9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10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 11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 16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 17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 2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 28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 30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 30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 32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 32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33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 34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 35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 36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 36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 38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 39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 39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 40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 40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1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43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 44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5		
제31조(지도·감독) ····· 45		
제32조(권한의 위임) ····· 47	제4조(권한의 위임) ····· 47	
제33조(벌칙) ····· 47		
제34조(양벌규정) ····· 47		
제35조(과태료) ····· 48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48	
부 칙 ····· 51	부 칙 ····· 51	부 칙 ····· 5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정 2002. 5.13, 법률 제 6698호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 8107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전부개정 2010. 2. 4, 법률 제10016호 타법개정 2010. 5.25, 법률 제10310호 일부개정 2011.11.14, 법률 제11075호 일부개정 2012.10.22, 법률 제11506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제 정 2002.11.14, 대통령령 제17778호 타법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2007. 6.26, 대통령령 제20104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전부개정 2011. 2. 1, 대통령령 제22657호 일부개정 2012. 6.29, 대통령령 제23903호 타법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5호 일부개정 2013. 4.22, 대통령령 제24510호	제 정 2002.11.14, 농림부령 제1429호 일부개정 2007. 6.28, 농림부령 제1559호 타법개정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호 타법개정 2008. 6.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2호 타법개정 2009.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94호 전부개정 2011. 2.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2. 6.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1호 타법개정 2013. 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제11506호, 2012.10.2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10호, 2013.4.2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6. "임의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축산업자 8명 이내 2. 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조금의 명칭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4.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자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용의 방법 및 절차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축산 관련 신문 3. 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과잉과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양·오리·사슴·토끼·칠면조·꿀벌·거위·메추리 및 꿩: 각 50명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2.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⑥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축산단체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 축산단체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주소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②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4.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납(代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 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의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③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集乳)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2.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때에는 즉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의거출금의 금액 2. 임의자조금의 폐지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1. 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3. 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가공·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관리한다. ②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의원회"는 "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축산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축산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 업무를 중단한 자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제23조제2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4항 전단(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	② 삭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0016호, 2010.2.4>	부 칙 <제22657호, 2011.2.1>	부 칙 <제168호, 201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하기 전까지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의원 선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납기관의 관리위원회 납부가 지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조금 운용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제2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자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자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으로 본다. 제7조(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감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제1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임의자조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1075호, 2011.11.14>	부 칙 <제23903호, 2012.6.29>	부 칙 <제291호, 2012.6.29>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06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690호, 2013.3.23>	부 칙 <제24455호, 2013.3.23>	부 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8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6항·제7항, 제23조제5항·제6항, 제24조 및 제3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⑨까지 생략 ⑦⓪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①부터 ⑦⑥까지 생략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본문·단서, 제8조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제4항·제5항·제8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5항·제6항, 제24조, 제2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 및 제3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6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㉝부터 ㉑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㊲부터 ㊴까지 생략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제24510호, 2013.4.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 63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64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text{선출구별 대의원 수} = \left(\frac{\text{선출구별 축산업자 수}}{\text{전체 축산업자 수}} \times \text{대의원 총수} \times 0.5\right) + \left(\frac{\text{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text{전체 가축사육 마릿수}} \times \text{대의원 총수} \times 0.5\right)$$

비고: 선출구별 축산업자 수 및 전체 축산업자 수와 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 및 전체 가축사육 마릿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2] <개정 2013.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300	500	700
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마.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바. 법 제23조제2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400	600	900
사. 법 제23조제4항 전단(법 제2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아.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축산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발간등록번호 : 11-1543000-000048-0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인쇄
2013년 5월 발행

발 행 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편 집 인 :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장

발 행 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담당자 : 허혜민 ☎ (044)201-2335
http://www.mafra.go.kr

인 쇄 처 : 한라기획 ☎ (044)868-7334~5